

의안 번호	1378	<p>【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】</p> 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검 토 보 고 서</h1>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. 6. 30.(금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7. 3.(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7. 12.(수)

2. 제안이유

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법령근거 없이 규제 신설된 조항 삭제 및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근거법령 명시, 문구 정비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법제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조항 문구 정비 (안 제2조제1호, 제7조제3항, 제11조제5항)
- 나. 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내용은 법령근거 없이 규제 신설된 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반하므로 해당 조항 [제9조(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)] 삭제
- 다. 분뇨수집 및 처리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는 사업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이므로 그에 대한 근거법령 명시(안 제10조제2항)

4. 근거법규

- 가. 「하수도법」 제41조제4항, 제4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9
- 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인 「하수도법」에 따른 근거법령명시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,
-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근거법규

하수도법

제41조(분뇨처리 의무) 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분뇨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시·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·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가 수집·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·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1.4.5., 2013.7.16.>

제47조(분뇨수집·운반업자의 준수사항) ② 분뇨수집·운반업자(소속종사자를 포함한다)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·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[별표 9] <개정 2015.12.22.>

분뇨수집 · 운반업자의 준수사항(제47조 관련)

1.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 · 운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2.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, 영업대상, 그 밖의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.
3.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 · 운반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고,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4. 영업자의 상호, 영업소재지,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역신문 · 방송 또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.
5.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스크(scum)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,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(碎石), 플라스틱 등 여재(濾材)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.
6.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하거나 폐쇄하는 때에는 반드시 가스(산소, 일산화탄소, 황화수소)측정기를 휴대하여야 한다.